

카디안자산운용 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의사록

1. 일시 : 2026 년 3 월 25 일 11 시 30 분

2. 회의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 층(여의도동, 서울 국제금융센터) 회사 회의실

3. 출석사항

- 발행주식총수 : 6,540,000 주
- 주주총수 : 1 인
- 출석주주수 : 1 인
- 출석주주가 소유한 주식수 : 6,540,000 주

4. 의장, 대표이사 김상준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본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5. 부의안건:

- (1) 사업보고서 검토의 건
- (2) 재무제표 및 배당금 승인의 건
- (3) 정관 개정의 건

6. 의사경과:

- (1) 의장은 제 1 호의 안건을 상정하고 출석한 단독 주주에게 2025 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후 2025 회계 연도 동안 중요한 영업사항을 보고하다.
- (2) 의장은 이어서 제 2 호의 안건을 상정하고 출석한 단독 주주에게 2025 년 결산 재무제표를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 바, 출석주주는 이를 신중히 검토한 후 승인, 가결하고 배당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승인하다.
- (3) 의장은 이어서 제 3 호의 안건을 상정하고 정관을 **별첨**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 바, 출석주주는 이를 신중히 검토한 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의장은 더 이상 논의할 안건이 없어 12 시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하다.

2026 년 3 월 25 일

카디안자산운용 주식회사

의장/대표이사 김 상 준




기타비상무이사 서 재 균




기타비상무이사 한 정 훈




정관 신구조표

개정 전	개정 후	검토의견
<p>제2조 (목적) ① (생략)</p> <p>1. 집합투자기구 운용 및 판매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u>1항 3호 및 2항</u>)</p> <p>2. 투자자문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u>1항 4호</u>)</p> <p>3. 투자일임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u>1항 5호</u>)</p> <p>4. 콜거래업무</p> <p>5. 어음매입업무</p> <p>6. <u>전 각 호의</u>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p> <p>② (생략)</p>	<p>제2조 (목적) ① (현행과 같음)</p> <p>1. 집합투자기구 운용 및 판매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p> <p>2. 투자자문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p> <p>3. 투자일임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p> <p>4. 콜거래업무</p> <p>5. 어음매입업무</p> <p>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p> <p>② (현행과 같음)</p> 	<p>- 단순 오기를 정정하였습니다.</p>
<p>제9조 (신주인수권)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p>	<p>제9조 (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p>	<p>- 귀사는 상장법인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이 아닌 ‘상법’이 적용됩니다. 그럼</p>

<p><u>의 경우에는</u> 주주 외의 자에게 <u>이사회의 결의</u>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규정</u>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u>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7</u>의 규정에 의하여 <u>우리사주조합원</u>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 하는 경우 4.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5</u>의 규정에 의하여 <u>주식매입선택권</u>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생략) ③ (생략) 	<p>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3. 공모증자를 위한 경우 4. 외국법인의 자본 참여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p>에도 현 정관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사례를 포괄적인 형태로 정하였습니다.</p> <p>-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4항 단서에서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상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비상장법인인 귀사의 정관에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10조를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제9조 제4항, 제5항에 내용을 통합하였습니다.</p> <p>- 제6항의 내용은 상법 제418조 제4항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p>	
---	--	---	---

<p>④ <신설></p>	<p>④ 회사가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p> <p>⑤ 제2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단, 법령에서 달리 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p>⑤ <신설></p>	
<p>⑥ <신설></p>	


	<p>3.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p> <p>4. 신주의 인수방법</p> <p>5.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p>	
<p>제10조 (일반공모증자 등) ① <u>회사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u>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u>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u>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p> <p>③ <u>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u></p>	<p>제10조 (일반공모증자 등) <삭제></p> 	<p>-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4항 단서에서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상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비상장법인인 귀사의 정관에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10조를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제9조 제4항, 제5항에 내용을 통합하였습니다.</p>

<p><u>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에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u></p>		
<p>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p> <p>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 경영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③ (생략)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 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 	<p>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 경영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 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 	<p>- 단순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p>

<p>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p> <p>⑤ (생략)</p> <p>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u>부여 일</u>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p> <p>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u>부여 일</u>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p> <p>⑥ (생략)</p> <p>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p> <p>2. (생략)</p> <p>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p> <p>⑤ (현행과 같음)</p> <p>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p> <p>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p> <p>2. (현행과 같음)</p> <p>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p> <p>⑤ (현행과 같음)</p> <p>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p> <p>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p> <p>2. (현행과 같음)</p> <p>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p> <p>⑤ (현행과 같음)</p> <p>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p> <p>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p> <p>2. (현행과 같음)</p> <p>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	--	--	--


<p>제14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4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회사에’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p>
<p>제21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u>발송하여야 한다.</u></p>	<p>제21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	<p>- 귀사가 주주의 동의를 전제로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p>
<p>제26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u>주주총회 일의</u>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그 뜻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6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 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그 뜻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단순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p>

<p>제28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이 회사에서 송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회일 3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⑤ (생략)</p>	<p>제28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이 회사에서 송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 3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 단순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p>
<p>제29조 (주주총회의 성립 및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p>	<p>제29조 (주주총회의 성립 및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p>	<p>- 주주총회 보통결의의 예외가 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p>
<p>제37조 (이사의 보고의무 등)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신설></p>	<p>제37조 (이사의 보고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내부통제</p>	<p>-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를 반영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대표이사의 총괄적인 관리조치의무를 규정하는 한편,</p>


	<p>및 위험관리를 위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이행하고, 관리조치 이행내역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의 보고 의무를 반영하여 정관 제37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p>
<p>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제1호와 같다.</p> <p>② (생략) ③ (생략)</p>	<p>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제1호>와 같다.</p> <p>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 단순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p>
<p>제42조 (위원회) ① (생략)</p> <p>1. (생략) 2.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p>	<p>제42조 (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p> 	<p>- 제7항에서의 ‘제40조 제3항’ 문구를 이사회 소집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제38조 제3항으로 정정하였습니다.</p>

<p>㉗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40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다시 결의할 수 없다.</p> <p>⑧ (생략)</p>	<p>㉗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38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다시 결의할 수 없다.</p> <p>⑧ (현행과 같음)</p>	
<p>제46조 (감사의 보고의무 등) ① (생략)</p> <p>②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p>	<p>제46조 (감사의 보고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p>	<p>- 단순 오기를 정정하였습니다.</p>
<p>제47조 (감사록) 감사(제4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p>	<p>제47조 (감사록) 감사(제4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p>	<p>- 단순 오기를 정정하였습니다.</p>

<p>안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제4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전원을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제4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전원을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50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제4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p>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0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제4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p>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단순 오기를 정정하였습니다.</p>

<p>③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u>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u> 1주간 전부터 회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③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회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51조 (이익금의 처분)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기타의 <u>이익잉여금처분액</u> 	<p>제51조 (이익금의 처분)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p>- 단순 오기를 정정하였습니다.</p>
<p>제52조의2 (중간배당)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생략) ③ (생략) 1. 직전결산기의 <u>자본의</u> 액 2. (생략) 3. (생략) 4. (생략) 	<p>제52조의2 (중간배당)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p>- 상법 제462조의3 제2항 제1호를 반영하여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으로 문구를 정정하였습니다.</p>

<p>5. (생략) ④ (생략)</p>	<p>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p>	
<p>제54조 (언어) 이 정관은 영문본과 국문본으로 작성되며, 영문본과 국문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국문본이 우선한다.</p>	<p>제54조 (언어) 이 정관은 국문본으로 작성한다.</p>	<p>- 본 정관을 국문본으로만 작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p>
<p>부칙 제1조 (시행일) <신설></p>	<p>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 정관 개정안의 시행일을 추가하였습니다.</p>
<p><별표 제1호>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할 사항 1. 정관의 변경 2. 경영목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p>	<p><별표 제1호>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할 사항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동법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p>	<p>-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할 사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p>

<p>5의2. <신설></p> <p>6. <u>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u> <u>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동법 제27조</u> <u>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u> <u>및 폐지에 관한 사항</u></p> <p>6의2. <u>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u> <u>및 감독에 관한 사항</u></p> <p>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p> <p>8. 법령, 정관 및 제규정에서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p>	<p>및 폐지에 관한 사항</p> <p>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p> <p>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 책 수립에 관한 사항</p>  <p>6의2. <삭제></p> <p>7. (현행과 같음)</p> <p>8. (현행과 같음)</p>	
---	---	--